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간담회

한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Korea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 간담회 취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된 여러 민원과 이에 대한 협의회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의 간담회입니다.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 지역아동센터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건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의 실천 현장을 체험하고 배우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된 교과목으로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1) 체험 2) 배움 3)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사 필수 자격 취득의 요건 (교과목)

다만, '단서조건이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해결 대안으로서 정합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임. 이는 해당 기준선의 설정이 일반화의 오류로 비롯된 규제의 강화로 선의의 현장 체험과 배움, 그리고 상호 전문성의 상승 고리를 끊는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함.

① 현장의 체험 기능으로서의 지역아동센터 실습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의 실질적 체험을 위한 기능 (소규모시설의 수퍼비전은 현재 아동복지교사나 여타 외부 인력을 통해 활용 가능)

② 배움의 기능으로서의 지역아동센터 실습
배움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현장 매뉴얼이나 교육이 필요함.
(자원봉사센터처럼 활용 매뉴얼이나 실습관리 지침 등으로 관리가 가능함)

③ 전문성 향상 기능으로서의 지역아동센터 실습
전문성은 있으나 인력부족이나 수퍼비전의 체계화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단지, 전문성의 설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세워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여겨짐.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정신분석과 병리적 접근이 답일까?" 의 문제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은 개별화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사항은 2인, 5년 이상의 기준이 절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봄.

2. 2인 5년 이상의 절대기준의 정합성 결여

지역아동센터 **평균 종사 인원 2.4명 / 평균 이직률 3년.**

3년의 이직률 기준은 생활복지사의 시설장 전환 자격기준과 동일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준수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해당 아동복지분야 3년의 경력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임.

1) 실습이 유지되는 시설들의 구조 모순

① 부부(가족) 운영 센터 : 2명, 5년 이상 보장.

② 30인 이상 시설이 상대적 유리 : 30인 미만과 30인 이상의 차별 발생으로 일반적인 개인(민간)시설의 경우 목적 충족이 되어도 진입 자체가 어려움.

③ 시설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큼

※ 본질은 Text가 아닌 Context임.

(실습의 Context보다 절대기준을 통한 Text적 접근이 문제라 생각됨.)

특히, 공공성이 강화된(법인화)시설의 경우에도 실습 연계가 사실상 쉽지않고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에 역량 체크 (지역아동센터의 시행규칙 준수여부)

가. 기관실습 *(코로나 상황 이수기준 완화 조건이 배제된 내용임)*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업무 실무 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해당 규칙의 내용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충분하며 법의 저촉사항은 없음.

① 문제는 실습의 절대 기준선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타게팅 한 규정임.

② 숫자가 많으면 실습의 질이 높아질까? (연구나 결과적 관점에서 타당?)

③ 수퍼비전은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라면 퇴출시켜야 하고 제도의 문제라면 개선해야 한다.
학교 & 현장의 결탁된 비리 요인은 도덕성 문제와 제도적 모순이 합작되어 발생 (도덕성의 문제는 퇴출하고 제도적 문제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

④ **5년 기한의 기준선은** 합리적인 수퍼비전의 조건인가? (2인, 5년의 기준선은 코로나 상황, 현대사회 흐름과도 충돌한다.)
- 2인 AND 5년의 배경과 합리적 근거는? _(질문)
- 진입하는 실습생들에게 소규모시설보다 **대규모 시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하여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대형시설에 대한 인적 자원 유입은 확대**되고 **소규모 시설은 유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적 규제**는 시설 간 양극화를 부추기고 상실감을 가져오게 한다. 체험과 배움, 그리고 전문성 향상은 작은 곳에서 더 현실적으로 발휘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풀뿌리 현장에 대한 투자 관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3. 기존의 실태조사 여부와 현재의 실태에 대한 조사여부 (질문)

1) 기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사고 이후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실태는 어떠했는가?
2) 제도를 바꾸고 난 후,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의 변화가 있는가? 소규모시설의 실습 평가나 실습 매뉴얼, 교육 등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4. 교원(교생) 실습과의 차별점

	교원(교생)실습	
주관	교육청 본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 선별	본청 심사	협회 심사
현장 신청	원하는 학교 신청 (선정기준)	원하는 기관 신청 (선정기준)
비용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투자)**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회복지사 **자부담(비용)** **- 실습생이 직접 기관으로**
실습비 사용	실습생 기자재, 준비물, 관리 등	개별 기관에서
실습교육	1회, 실무자 교육 (우수사례, 유의사항 등)	현장실습교육기관 설명회 (지침변경 등)
수퍼바이저 기능 및 혜택	멘토링, 자신의 수업공개, 연구점수 부여(승진고과), 수당X	다양한 영역 참여(경험) 수퍼비전 수당

1) 교원(교생)실습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실습 경비의 출처다. 교생실습은 전액 국가지원인 반면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개인 부담이다. 즉, 실습 경비 자체에 있어서 교원은 투자의 대상으로 1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된 반면,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예비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부담해야만 한다.
실습비의 용도는 극명하다. 교생 실습비는 실습을 위한 집기(책상, 의자, 컴퓨터 등)와 기자재 마련, 그리고 실습 준비물과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개별기관에서 판단한다. 문제는 이런 용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의 용처를 규정하고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실습교육에 있어서 교육청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대개 학교 실무자들 중심으로 교육이 한 차례 가지게 되는데 우수사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교류를 돕는다.
반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지침변경 설명회만 확인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수퍼바이저들의 업무적 부담이 있는데 학교는 수퍼바이저의 수업공개라든지, 멘토링(코칭) 등 수업에 필요한 요인과 행정 등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실습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한다. 반면,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불하고 있다. 수입 원천이 개별화되어 되어 실습비 산정도 들쭉날쭉하고 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늘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해왔다. 담당부처에서 실습을 투자적 인재육성으로 보는지 일자리와 성과로 보는지의 접근방식이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무턱대로 범법의 결과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땜질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의 실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회에 요청한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인원제한 규정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선순환 유입을 막고 있고 이는 곧, 소규모시설에 대한 차별과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땜질식 규제보다는 정책의 바른 관점에서 개선해 주기를 요청한다.
2. 실습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실습비를 개인에게서 요구하기보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에 걸 맞는 사회복지 인재 양성의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실습비의 사용 용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별도의 용도(부정사용의 근거)에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실습의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규칙 제정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한사협과 우리는 신뢰의 관계다. 협력과 소통으로 건강한 복지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한다.